

[별표 3]

과징금의 금액(제26조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제25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의 기간에 나목 또는 다목에 의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당해 제조소등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 2호가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간 매출액은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매출액을 환산한다.

다. 연간 매출액이 없거나 연간 매출액의 산출이 곤란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수)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 나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2. 과징금 산정기준

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 원)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 천원)
1	1억 이하	30
2	1억 초과 ~ 2억 이하	50
3	2억 초과 ~ 3억 이하	70
4	3억 초과 ~ 5억 이하	120
5	5억 초과 ~ 7억 이하	160
6	7억 초과 ~ 10억 이하	200
7	10억 초과 ~ 13억 이하	240
8	13억 초과 ~ 16억 이하	280
9	16억 초과 ~ 20억 이하	320
10	20억 초과 ~ 25억 이하	360
11	25억 초과 ~ 30억 이하	400
12	30억 초과 ~ 40억 이하	440
13	40억 초과 ~ 50억 이하	480
14	50억 초과 ~ 70억 이하	520
15	70억 초과 ~ 100억 이하	560
16	100억 초과 ~ 150억 이하	600
17	150억 초과 ~ 200억 이하	640
18	200억 초과 ~ 300억 이하	680
19	300억 초과 ~ 400억 이하	720
20	400억 초과 ~ 500억 이하	760
21	500억 초과 ~ 600억 이하	800
22	600억 초과	840

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

등급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수)		1일당 과징금의 금액 (단위 : 천원)
	저장량	취급량	
1	50배 이하	30배 이하	30
2	50배 초과 ~ 100배 이하	30배 초과 ~ 100배 이하	100
3	100배 초과 ~ 1,000배 이하	100배 초과 ~ 500배 이하	400
4	1,000배 초과 ~ 10,000배 이하	500배 초과 ~ 1,000배 이하	600
5	10,000배 초과 ~ 100,000배 이하	1,000배 초과 ~ 2,000배 이하	800
6	100,000배 초과	2,000배 초과	1000
비 고 1. 저장량과 취급량이 다른 경우에는 둘중 많은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자가발전, 자가난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이표 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을 과징금의 금액으로 한다.			